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2. . .<br>(제 회)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전해철<br>(행정안전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비대면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의 정원 10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통계청으로 이체하고, 통계청에 비대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사관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평가대상 정원 4명 중 2명(4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제통계국 1개 정책관등 및 사회통계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통계청에 가계통계 분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하였던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21. ~ 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3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현장조사”를 각각 “통계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중 “통계조사”를 각각 “국가통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39명”을 “38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74”를 “684”로 하고, 일반직 계 “673”을 “683”으로 하

며, 3급 또는 4급 이하 “663”을 “67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1,472”를 각각 “1,46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468”을 “1,458”로 한다.

별표 4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같은 표 1)[종전의 2)] 및 2)[종전의 3)]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각각 “2024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통계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       |   |
|-------|---|
| 총계    | 1 |
| 일반직 계 | 1 |
| 5급    | 1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통계정책국) ① (생    략)             | 제7조(통계정책국) ① (현행과 같<br>음)                    |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br>다.             | ②-----<br>--.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11. · 12. 삭    제                  |                                              |
| <u>&lt;신    설&gt;</u>             | <u>13.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br/>및 시행</u>             |
| <u>&lt;신    설&gt;</u>             | <u>1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br/>사항</u>              |
| <u>&lt;신    설&gt;</u>             | <u>15.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br/>지원에 관한 사항</u>     |
| <u>14. · 15. (생    략)</u>         | <u>11. · 12. (현행 제14호 및 제15<br/>호와 같음)</u>   |
| <u>&lt;신    설&gt;</u>             | <u>16.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br/>항</u>              |
| 제7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br>② (생    략) | 제7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br>② (현행과 같음)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br>다.            | ③ -----<br>--.                               |
| 1. ~ 19. (생    략)                 | 1. ~ 19.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u>20.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br/>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
| <u>&lt;신    설&gt;</u>             | <u>21.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u>                    |

|                                     |                               |
|-------------------------------------|-------------------------------|
|                                     | <u>화에 관한 사항</u>               |
| 제10조(조사관리국) ① (생략)                  | 제10조(조사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br>--.                |
| 1. <u>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u>         | <u>&lt;삭 제&gt;</u>            |
| 1의2. <u>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 <u>&lt;삭 제&gt;</u>            |
| 2. <u>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u> | <u>&lt;삭 제&gt;</u>            |
| 3. <u>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u>           | <u>&lt;삭 제&gt;</u>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5. <u>현장조사</u>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u>통계조사</u> -----<br>----- |
| 6. <u>현장조사</u>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 6. <u>통계조사</u> -----<br>----- |
| 7. <u>현장조사</u>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u>통계조사</u> -----<br>----- |
| 8. <u>현장조사</u> 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 8. <u>통계조사</u> -----<br>----- |
| 9. <u>현장조사</u>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9. <u>통계조사</u> -----<br>----- |
| 10. ~ 13. (생략)                      | 10. ~ 13. (현행과 같음)            |
| 14. <u>통계조사</u> 의 대행에 관한 기          | 14. <u>국가통계</u> -----         |

-----

15. 국가통계-----  
-----  
-----

16. 국가통계-----  
-----

17. 국가통계-----  
-----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38명

제24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 31  
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  
을 통계청에 둔다.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 정 안      | 증   감 |
|-----------------|------------|------------|-------|
| 총 계             | <u>674</u> | <u>684</u> | +10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673</u> | <u>683</u> | +10   |
| ·               |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 <u>663</u> | <u>673</u> | +10   |
| ·               | ·          | ·          |       |

[별표 3]

통계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1,472</u> | <u>1,462</u> | -10 |
| 일반직 계       | <u>1,472</u> | <u>1,462</u> | -10 |
| ·           |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 <u>1,468</u> | <u>1,458</u>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
| 연 락 처       | (044) 205 - 2322 |